

전략물자(COCOM) 수출입 공고 해설

남 기 만

상공자원부 무역협력과 서기관 대우

1. 개관

COCOM(대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은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물자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1949년 설립된 비공식 국제기구로서 현재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및 EC(아일랜드 제외)등 1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COCOM은 일종의 신사협정이므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통제 품목과 통제 대상국가만을 정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COCOM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87년에 미국과 체결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COCOM에 준하는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우선 '90년 7월 1일부터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하였고 '92년 11월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개정,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함으로써 '93년 7월 1일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고시하게 되었다.

한편, 전략기술은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93년 7월 1일 기술수출공고를 고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COCOM에 준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중심으로 수출입 통제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기본체계

대외무역법 제24조의 3은 상공자원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 특정한 물품의 수출 허가제도의 실시 등을 통하여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이하 “공고”) 전략물자의 범위, 수출제한지역 및 수출허가 절차, 수입절차 등 기본적 제도와 전략물자 판정제도,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수출허가제도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공고 제3조에 의하면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표 1 참조)

이와같이 수출허가 기관을 구분한 것은 방산물자의 경우 기존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미 국방부 장관의 허가대상

이며, 핵관련 물자의 경우 원자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당해물품의 수출절차를 상공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원자력법 제106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전략물자의 품목 구분 및 수출허가 기관

구분	개념	수출허가기관
일반산업용물자	일반산업용 물자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 Use)의 첨단 기술물자	상공부자원부장관
방산물자	군사용 목적에 공하는 물자	국방부장관
핵관련 물자	핵물질, 핵연료 및 관련 장비	과학기술처장관

한편, 이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기존의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다. 즉 법 제19조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시에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외환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승인 권한도 외국 환은행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당해물품이 규제대상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수출허가시 심사사항도 수출대상국가 수입자, 최종 수요자 및 당해물품의 성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법 제24조의 3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외국환 은행에서 수출승인을 받기 이전에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나」지역 국가의 경우)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다」지역 국가의 경우)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규제 국가의 수출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는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로서 자국의 수입자가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서류로서 COCOM 회원국들이 수출통제의 한 Mechanism으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수입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용도를 명백히 밝히고 이를 제3국으로 재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류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의 사전 준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9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공고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전략물자의 범위와 판정제도

대외무역법 제24조의 3은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정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출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공자원부 장관은 동규정에 의거하여 COCOM의 규제대상 전략물자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공고 제2조 1호에 의하면 〈표 1〉의 전략물자 목록에 계기된 품목중에서 〈표 2〉의 전략물자규격 및 성능을 초과하는 물자를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로 정의 하고 있는 바, 〈표 1〉은 일반산업용물자, 방산물자 및 핵관련 물자 등 총 148개의 전략물자 품목군의 목록과 수출제한지역을 나열하고 있으며 〈표 2〉는 각 품목별 통제대상 규격·성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각 품목구분은 〈표 1〉 참조)

이같이 전략물자의 목록과 전략물자의 규격 및 성능으로 전략물자 리스트를 구분한 것은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일 또한 방대하여 실제 이를 수출통제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품목군과 품목명으로 단순화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2〉의 예를 설명하면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은 “범용직접회로중 기억회로로서 1 Mbit이상의 EEPROM” 등과 같이 각 품목별로 기술수준, 규격 등을 상세히 나열해 놓고 있다. 따라서 〈표 2〉 “전략물자 규격 및 성능”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만을 별도로 계기한 것이 〈표 1〉 전략물자 목록이다.

따라서, 반도체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표 1〉의 전략물자 목록에서 반도체 분야의 통제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표 2〉의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규격 및 성능과 수출물품의 규격·성능을 비교·확인하면 된다.

〈표 2〉 전략물자의 예시 및 HS의 비교

전략물자 목록〈표 1〉	전략물자 규격 및 성능〈표 2〉	HS분류
3A01.1 범용 직접회로	3A01.1 범용직접회로로서 다음의 것 가.~다. 생략 라. 기억회로로서 다음의 것 1)EEPROM중 기억용량이 1M BIT초과 2)SRAM으로서 기억용량이 1M BIT초과	8542119010 : 기억소자 8542119090 : 기타(기억소자) EEPROM, SRAM중 1M BIT초과만 전략물자

즉 〈표 1〉의 “전략물자목록”은 전략물자 품목군과 품목명, 통제번호 및 수출제한지역을 규정한 기본적인 색인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표 1〉의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은 〈표 1〉의 품목중 수출이 통제되는 기술수준 규격 또는 성능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략물자의 실질적인 증거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전략물자 품목 체계는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수출품목관리의 기본체

계인 HS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와 기존 HS번호를 연계한 연계표를 참고자료로서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이 기존의 HS번호를 이용하여 손쉽게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전략물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는 자기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고 제11조는 전략물자 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상공자원부 장관(방산물자인 경우 국방부 장관, 핵관련 물자의 경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전략물자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판정서(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서)를 발급하며, 수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고할 수 있다.(공고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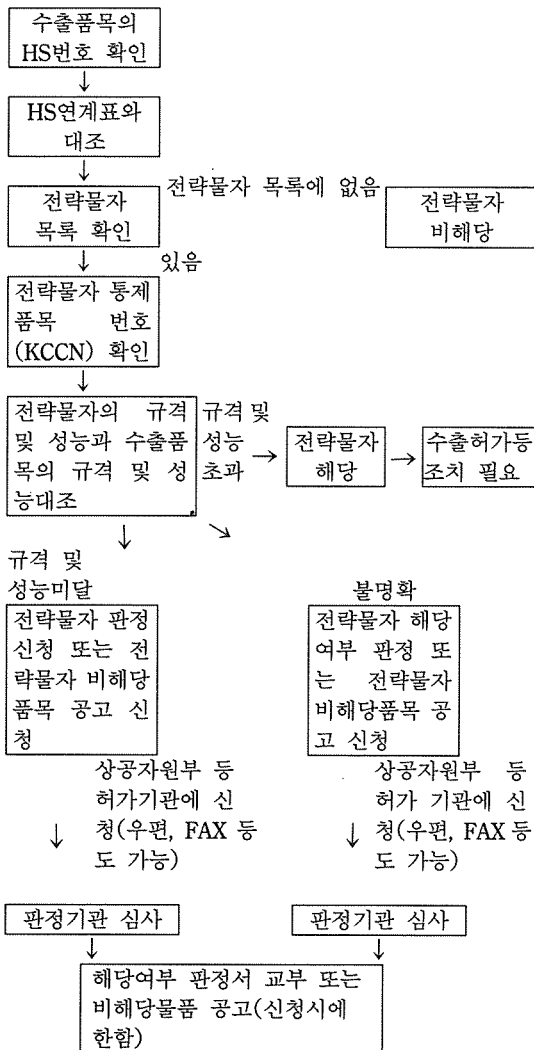
이 판정서는 수출물품의 모델별로 발급하게 되는데 1년간 유효하므로 당해 모델제품의 수출시마다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당해물품의 수출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상공자원부 장관의 각 회사별, 모델별, 품목별로 전략물자 비해당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판정서가 필요없이 통관시 비해당 공고와 수출물품의 동일 모델 여부만 확인하므로 보다 간편하게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당해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니라 해도 일단 전략물자 목록에 동일한 품목명이 계기되어 있거나, 전략물자-HS연계표상에서 기재된 전략물자가 속하는 HS번호의 동일한 HS에 속한다면 당해 수출물품은 수출통관시 세관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절차를 받게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물자는 고도의 첨단기술제품이므로 이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관시에 세관의 확인으로 인한 통과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세관은 필요시 위에서 언급한 전략물자 판정서를 요구하게 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는 사전에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전략물자 판정서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 수출제한 지역
공고 제2조는 수출제한지역을 3가지로 구분

하고 있는 바, 전략물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국가 즉, COCOM의 규제대상국은 『가』지역으로 COCOM회원국 및 협력국은 『나』지역으로, 기타 국가는 『다』지역으로 분류되며 <표 3>지역별 국가분류 참조) 각 지역에 따라 제한이 내용 및 허가신청 절차가 각각 다르다.

먼저, 『가』지역의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공고 제2조 2호) 다만, 전략물자 중에서도 기술수준이 시급한 일부 품목의 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바, 이같은 예외규정은 공고의 <표 2>에 각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나』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전략물자 중에서도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나』지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즉 <표 1>의 전략물자 목록 중에서 수출제한 지역이 『가』, 『다』지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나』지역 수출시 허가가 면제되며 수출제한지

<표 3> 전략물자 수출제한지역 구분

지역	국 가 명	수출허가신청서 첨부서류
『가』 지역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폴란드, 베트남, 몽고,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최종수하인진술서 또는 수입증명서 및 전략물자의 기술특성명세서
『나』 지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캐나다,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 아일랜드	수입증명서
『다』 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 지역의 국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또는 수입증명서

역이 『전지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지역은 모든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서 수출허가 신청시에는 최종 수하인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수출절차 간소화제도 및 포괄 수출허가제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과거에 비하여 허가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고에서는 몇가지 수출절차 간소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먼저, 일반산업용물자의 경우 1만불 이하의 소액수출인 경우에는 분할 수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공고 제8조)

또한, 전략물자의 수출이 빈번한 업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년간 필요한 수출허가를 1회에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포괄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최근 6개월간 5건 이상의 전략물자 수출실적을 보

유한 업체로서 상공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략물자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한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가 수출하는 품목과 수입자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공고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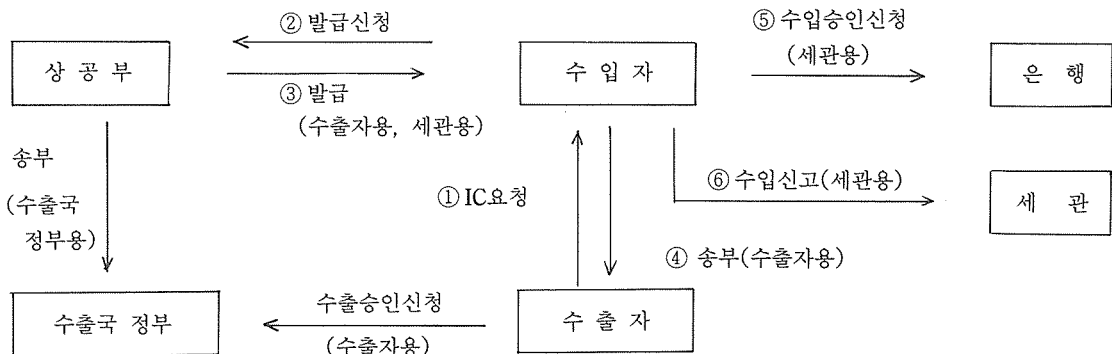
동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은 상공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고 있는 바,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략물자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정기적인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며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원을 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바. 수입통제 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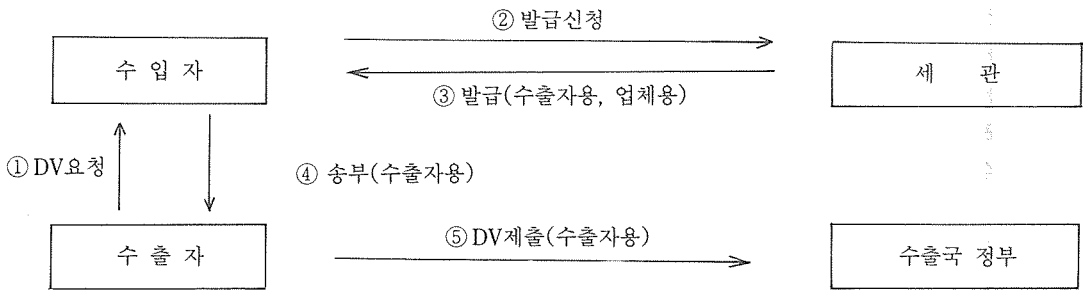
전략물자의 수입통제는 국제적으로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 IC)의 통관증명서(Delivery Verification : DV)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입증명서(IC)는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유출시키지 않고 반드시 국내로 반입할 것을 서약하는 서류로서,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가 자국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수출자를 통해 수출국정부에 제출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 IC와 수입국정부로부터 송부받은 IC를 대조·심사하여 수출을 승인하게 된다.

〈그림 2〉 수입증명서(IC) 발급절차



〈그림 3〉 통관증명서(DV) 발급절차



동수입증명제도는 '90년 7월 1일부터 수출 통제에 앞서 시행되어 왔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상공자원부 장관만이 수입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금번 고시된 공고에서는 전략물자 품목에 따라 방산물자의 경우 국방부 장관, 핵관련물자의 경우 과학기술처 장관이 각각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공고 제26조)

한편, 전략물자 통관증명서(DV)는 해당 전략물자가 수입국으로 통관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수출국정부(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가 통관지 세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수출국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사.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의 11의 규정예 의하면 상공지원부 장관은 대외무역법의 규정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1년간 전략물자의 수

출·수입이 금지되고 외국정부에 그 명단이 통보된다.

따라서,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3. 결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는 우리나라의 무역제도의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

다만, 이같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하여는 각 무역업체가 동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자체적인 전략물자 여부 판단과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수출입통제제도 이전에 전략물자 유출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전략물자의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